



대출거래 약정서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

20 년 월 일

-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 (인) 주소 :
담보제공자 : (인) 주소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상품명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대출기간 시작일		대출기간 종료일 ^{주 1)}	
대출금리의 연이율	<input type="checkbox"/>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선택]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 %	
	<input type="checkbox"/> 변동 (시장금리 연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선택] ※금리변동주기 ()개월	<input type="checkbo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input type="checkbox"/> ()을 금융채유통수익률+()% <input type="checkbox"/> ()을 국고채유통수익률+()%	
	<input type="checkbox"/> 혼합 (고정+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적용] ※변동금리기간 중 금리변동주기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급후()년까지 고정()%고정금리 기간 종료 후 다음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input type="checkbox"/> ()을 금융채유통수익률+()% <input type="checkbox"/> ()을 국고채유통수익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신금리 연동 + ()% <input type="checkbox"/> () + ()%	
	※ 위 금리는 제 12 조에서 정한 우대 이율 ()%를 적용하여 인하된 금리입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계산방법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적용합니다. 2. 지연배상금율(연체금리)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15%이내로 합니다. 단, 대출금리가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연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1.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2.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실행 후 ()개월까지 발생하며, 세부사항은 제 5 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지급 요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한도거래)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종료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B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중 자유로이 원금을 상환하되, 대출기간 종료일에 나머지 원금을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년()개월 동안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년()월()일부터 매 1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거치기간 없이 매 1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원은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종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원금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년()개월 동안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년()월()일부터 매 1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 ※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한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분할상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주2)}	<input type="checkbox"/> 최초 이자는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시작일의 해당일을 매월 결산일로 하여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에 지급합니다. (한도거래 결산일)					
자동이체일(개별)	매월 ()일 ^{주2)}	자동이체 계좌				
대출금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원금, 이자, 수수료 및 비용 지급 동의	본인이 부담할 원금, 이자, 대출관련 수수료 및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출금 등의 없이 대출금 입금 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지급처리함에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인지세(50% 고객부담분) <input type="checkbox"/> 보증료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기타비용)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증서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질권설정금액	20 . 까지 입금총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주 1) 대출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주 2) ① 은행 자동이체 일괄 처리시간(저녁 6시) 이후에 상환자금을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카드대금결제, 계좌간 자동이체 등 각종 자동이체 처리 순서에 따라 지급 처리되므로, 잔액이 부족하여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은행 자동이체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 영업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에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에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시간에 제약없이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결산일에 처리하되, 한도초과 금액 발생시 상환기일은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③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등 증권류의 금액인 경우에는 결제될 때까지 지급가능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이체일 당일에 입금한 경우에는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 2 조 대출금리의 변동

① 제 1 조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시작일 현재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금리는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② 고정금리 대출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3 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기준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신규취급기준 COFIX 는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6개월)가 도래하는 날에 2영업일 전의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금융채유통수익률(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5년물)은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3개월, 6개월, 1년, 5년)가 도래하는 날에 2영업일 전의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
3. 국고채권 유통수익률(5년물)은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5년)가 도래하는 날에 2영업일 전의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국고채권 유통

B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 ④ **수신금리 연동 기준금리는** 예·적금담보대출에 적용하며, 담보 예·적금의 수신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 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하여 적용하는 금리로 본인의 신용, 담보조건, 대출기간 및 은행거래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 조건변경을 하거나 대출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변경된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지급 기일(이하 "약정 납입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종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남아있는 대출원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작일자(연체발생일)은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로 하며, 약정 납입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④ 연체증인 분할상환금(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작일자(연체발생일)은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로 하며, 해당 분할상환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거래인 경우, 약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곧 갚기로 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하 "미수이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 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남아있는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본인 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한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되, 약정 납입일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1개월 간 갚지 않으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이에 곧 대출금을 갚기로 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 조에 의해 대출금과 담보 예·적금을 상계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마이너스 통장 방식 한도거래에 대한 약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연계된 입출금 계좌(이하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등 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상환)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갚도록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요구(입출금 계좌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대금청구 포함)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에 연결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매월 결산일에 전월 결산일 익일부터 당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대출이자를 산정하고, 결산일에 모계좌에서 지급하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합니다.
- ④ 대출이자 계산을 위한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대출사용금액 = 해당일 마감시점 대출잔액 + (해당일 하루 중 최고 대출잔액 - 전일자 마감시점 대출잔액 또는 해당일 마감시점 대출잔액 중 큰 금액)
 - 「대출잔액」은 모계좌에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최고 대출잔액이란 절대값을 기준으로 최고값을 의미합니다.
 - 「마감」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24:00)을 의미합니다.
- ⑤ 대출한도금액 사용 제한
 1. 은행은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 3 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제 1 호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 은행은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B

제 5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 1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 조의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합니다.
 2.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 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3. 「대출잔여일수」는 중도상환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분할상환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제 10 조에서 정한 상계 등의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7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 1 조에 표시된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 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 · 개서 · 갱신 · 분할 · 병합 · 증액 · 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 1 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 1 조에 표시된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담보 · 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채권의 양도 · 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약 사항

-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및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 3 자에게 양도(신탁 포함)가 가능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를 합니다.
- ② 본인은 제 1 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항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채권)의 확정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추가대출 등에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제 1 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3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 3 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은 제 1 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과 대출채권 등의 양도일까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서면으로 하여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안 경우

B

에는 본인은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자동연장 및 자동상환

① 대출기간 종료일 도래 전, 기한연장에 대한 내부 심사를 통해 승인 결과가 안내되며, 기한연장 조건에 동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종료 일에 대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대출기간 종료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취급 거절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환조건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②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기한연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 종료일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 조에 의해 상계하기로 합니다. 단, 자동 이체 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대출금 상환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동 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은 이를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 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금리 우대 조건

① 제 1 조의 '대출금리의 연이율'은 아래와 같이 본인이 선택한 금리 우대 항목의 우대 이율만큼 인하된 이율이며, 우대 항목별 적용기준은 아래 기재된 각 항목의 우대 조건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금리 우대 항목	우대 조건	우대 이율
<input type="checkbox"/> ()	()	연 ()%
<input type="checkbox"/> ()	()	연 ()%
<input type="checkbox"/> ()	()	연 ()%

② 제 1 항의 금리 우대 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제 1 항의 우대 조건상 별도로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우대 이율은 제 1 조에서 정한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2. 본인이 대출 계약 체결 시 제 1 항에 따른 금리 우대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대출 계약을 철회하거나 약정 기일 전 해지한 경우, 대출 재신청 시에는 제 1 항의 금리 우대 항목이 부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